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노무비닷컴-발주자포함)

1. 개정시행(예정)일: 2026.06.04

2. 개정 내용

현행	개정 후	비고
<p>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및 정의) ③항 1"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건 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총칭하며, 그에 대하여 추가, 수정,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그 내역은 별표 3 양식에 따라 송부한 통지서상 하도급계약내역 참조).</p> <p><u><신설></u> 제 ③ 항 11.</p>	<p>계약서 제 1 조 (신탁의 목적 및 정의) 제 ③ 항 1.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건 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총칭하며, 그에 대하여 추가, 수정,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그 내역은 <u>별표 3-1 양식에 따라 송부한 통지서 또는 별표 3-2 양식에 따른 통지서 및 승낙서상 하도급계약내역 참조</u>).</p> <p>11.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라 함은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가. 위탁자가 지급불능상태(지급정지 등)에 있거나, 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그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어 주채권은행이 위탁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금융채권자에 통보한 때 또는 이와</p>	<p>제 1 조 제 ③ 항 1'통지서 및 승낙서 양식' 추가에 따른 별표 부기 추가</p> <p>11.'원도급사 직접 지급사유' 신설</p>

제7조 (수익권에 대한 지급)
<신설 삽입> 제 ③ 항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다. 위탁자에 대하여 해산신청, 법원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라.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마. 원도급사가 약정서상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공사대금(이하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사와 위탁자, 우선수익자간 합의한 경우
바. 위탁자의 타 사업장 체불이력이 확인되거나 사회보험료 등이 연체되는 경우
사. 위탁자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또는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원도급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수익자의 역무 등 제공 발생 후 익월 말까지 재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가 원도급사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차.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 (수익권에 대한 지급)
제 ③ 항

제 7 조
제 ③ 항 신설 삽입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 신설

한편,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에스프로신탁계좌 입금액으로 원도급사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익권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도급사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절차 및 지급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지급일은, 본건 사업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이 에스프로신탁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의 날(입금일 당일 포함)로서 원도급사가 통지하는 날 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원도급사에 의하여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일로 확정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2.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 금액은, 원도급사가 위 1.에 따라 통지한 금액 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원도급사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그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은 직불동의서(공사명, 직접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제출 받은 직불요청서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탁자는 위 1 호 및 2 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일에 확정된 금액을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해당 수익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 금원을 원도급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의 방식은 수탁자가 에스프로신탁계좌에서 원도급사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4. 어느 지급일에 에스프로신탁계좌 입금액이 우선수익자 전원에 대한 수익 지급에 부족한 경우, 원도급사가 전자적

<p>제18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항 1.매 분기말</p> <p>제20조 (중도해지) ①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1조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본건 사업 진행 등의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당사자 및 전문 인력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게 제공하고 본건 사업 종료일까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p> <p>제33조 <신설></p>	<p>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전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p> <p>제 18 조 (이익계산 및 지급) 제 ① 항 1. 매 분기말 마지막 영업일</p> <p>제 20 조 (중도해지) 제 ① 항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존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 31 조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본건 사업 진행 등의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당사자 및 전문 인력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신탁사무위임계약상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본건 사업 종료일까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p> <p>제 33 조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정산 감정) 제 ① 항 위탁자와 원도급사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정산에 관한 이견 또는 정산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신탁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와 원도급사가 합의한 전문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금전채권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정산 및 신탁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p>	<p>제 20 조 '우선수익자 동의' 삭제 '잔존신탁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p> <p>제 31 조 추가 및 신탁사무 위임계약상 신탁 재산관리자(신탁 계약세부사항 제9 조 참조)</p> <p>(제 33 조) 정산 감정 신설</p>
--	--	--

<p>(신탁계약 세부사항)</p> <p>제2조 ②항 1.(통지서) 2.통지서를 3.대항요건 구비는 별표3 통지서 양식에 따르기로 한다</p> <p>③항 제2항의 통지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② 항 감정인의 선정은 수탁자의 업무규정에 따르기로 하며, 수탁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한다.</p> <p>제 ③ 항 감정비용은 위탁자와 원도급사가 50%씩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며,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감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가 발생할 경우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서 최우선순위로 집행하기로 한다.</p> <p>제 ④ 항 금전채권신탁계약과 업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 한다.</p> <p>(신탁계약 세부사항)</p> <p>제 2 조 제 ② 항 1. (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 2. 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를 3. 대항요건 구비는 별표3-1 통지서 또는 별표3-2 통지서 및 승낙서 양식에 따르기로 한다</p> <p>제 ③ 항 제 2 항의 통지서 또는 통지서 및 승낙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통지서 및 승낙서’ 양식 추가에 따른 문구 삽입</p>
---	---	------------------------------------

<p>제3조 ①항 및 ②항 (별표3에 따름)</p> <p>[별표3] 채권양도(신탁)통지서</p> <p>통지인 주식회사 []</p> <p>[별표3-2] 신설</p>	<p>제 3 조 제 ① 항 및 제 ② 항 (별표3-1에 따름) 또는 확정일자부 통지서 및 승낙서(별표3-2에 따 름)</p> <p>[별표3-1]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양도(신탁)통지서</p> <p>통지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p> <p>[별표3-2]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양도(신탁) 통지서 및 승낙서" 양식 신설</p>	<p>별표 부기번호 세분화 및 통지서 제목명 변경</p> <p>[별표3-2] 전자양도용 통지 서 및 승낙서 양식 신설</p>
--	---	---

3.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여부 : 개정된 내용은 본 개정일 이후 신규, 연장,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